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410호 2011. 11. 30(수)

선	기 관 의 장
람	

고 시

○ 진안군 고시 제2011-70호 (진안군 도로명주소 고시)1

공 고

○ 진안군 공고 제2011-537호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30

진 안 군 수



○ 도로명주소 :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6 외 3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063-430-2261)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11.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53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6	20090202	국가지정문화재인 마이산이 소재한 지역이며, 진안의 대표적인 8경의 하나로서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함.	
2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201, 217-4	진안군 진안읍 가림길 252-6	20090202	본래 진안군 두미면의 지역으로서 내가 마을을 갈라 놓았으므로 가름내 또는 가림, 가림천이라 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추가고시
3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816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17	20110325	홍삼한방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4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824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22-22	20110325	홍삼한방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5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486-1	진안군 진안읍 솟터실길 100	20090202	궁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부기곡, 소일곡이라고 불렸으며 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6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838-3	진안군 안천면 교동길 9	20090202	당초 행정구역상 중리마을이었으나, 중배실과 교동으로 나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교동이라는 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7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 46-1	진안군 안천면 자신로 293-115	20090202	동향면 자신리 용암마을에서 안천면 신괴리 괴정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국도 13호 노선으로 해당 지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8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32	진안군 동향면 계향로 398-21	20090629	계북면과 진안군 동향면 지역 명칭을 합성하여 부여함.	
9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218	진안군 동향면 봉곡길 32-15	20090202	봉곡은 부근에 비봉귀소의 자리가 있고 배형곡이라고 하여 마을 앞 내에 다리를 놓지 않았다고 하며, 이 행정리명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10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404-4	진안군 동향면 계향로 430-21	20090629	계북면과 진안군 동향면 지역 명칭을 합성하여 부여함.	
11	진안군 동향면 자신리 산186-2	진안군 동향면 자신로 157-22	20090202	동향면 자신리 용암마을에서 안천면 신괴리 괴정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국도 13호 노선으로 해당 지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12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1327-1	진안군 동향면 내유길 9	20090202	반남박씨에 의해 형성되어 고려시대에 금구사라 불리다가 내금곡이라 불리웠음. 지금은 내금으로 불리는데 마을 산의 형세가 쇠금자여서 김씨가 들어오면 잘산다는 속설도 있는 마을임. 이 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13	진안군 상천면 구룡리 산85-3	진안군 상천면 진무로 2673-138	20090629	진안군 마령면에서 우주군 적삼면을 연결하는 30번 국도노선으로 해당 지역명의 합성으로 도로명을 부여함.	
14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산62-1, 368-5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714-7	20090629	임실군 성수면과 진안군 진안읍을 연결하는 30번 국도 노선으로 해당 지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추가고시
15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444-1	진안군 백운면 평가로 34	20090202	백운면 평장리 정송삼거리에서 진안읍 가림리 은천삼거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해당 지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16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654, 720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555	20090629	임실군 성수면과 진안군 진안읍을 연결하는 30번 국도 노선으로 해당 지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추가고시
17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465-1	진안군 백운면 동산길 39-29	20090202	서촌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내동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하여 동산이라 불리웠으며, 이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18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142-1, 143-1	진안군 백운면 남퇴1길 23	20090202	남계와 분토동을 합한 행정리명으로 마을명칭과 일련번호를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추가고시
19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174, 178, 179	진안군 백운면 동남로 145	20090202	백운면 동창리와 남계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법정리의 합성으로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추가고시
20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453-17	진안군 백운면 남퇴2길 65	20090202	남계와 분토동을 합한 행정리명으로 마을명칭과 일련번호를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정정고시
21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564-1, 565-1	진안군 백운면 동남로 224	20090202	백운면 동창리와 남계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법정리의 합성으로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추가고시
22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617-2, 617-7	진안군 백운면 동남로 172-69	20090202	백운면 동창리와 남계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법정리의 합성으로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추가고시
23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413	진안군 백운면 두원길 45-20	20090202	진안의 최남단에 위치한 진안, 장수, 임실 3개군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삼원이라 하였으나, 그 후 두원이라 개칭하였으며, 이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24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441-1, 441-4	진안군 백운면 두원길 58	20090202	진안의 최남단에 위치한 진안, 장수, 임실 3개군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삼원이라 하였으나, 그 후 두원이라 개칭하였으며, 이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25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450	진안군 백운면 백장로 700	20090629	진안군 백운면에서 장수군 정수읍을 연결하는 지방도 742번 노선으로 지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26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547-1, 549	진안군 백운면 노촌길 43-6	20090202	본래 진안군 일동면 지역으로 앞내에 갈나무가 많았으므로 갈거리, 갈길 또는 노촌이라 하였으며 이 법정리명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추가고시
27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010	진안군 성수면 원좌산1길 10-13	20090202	마을 뒷산이 소가 누워있는 모습인 와우월이고 소의 머리가 좌측으로 있다고 하여 좌산이라 불렸으며, 마을 명칭과 일련번호를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28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445-15, 445-1	진안군 마령면 텃골길 53	20090202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형성된 마을로 텃골농장이라 하여 이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추가고시
29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161, 1163	진안군 마령면 덕천로 318-3	20090202	큰 내가 흐르므로 덕천이라 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동, 장재동, 추동, 신동, 안방리, 판치리, 지소리, 내동을 병합하여 덕천리라 하였으며, 이 법정리명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종전주소 추가고시
30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1179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742-8	20090202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봉산리와 학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봉산과 학산의 이름을 따서 봉학리라 하여 정천면에 편입되었으며, 이 법정리명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31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135-2, 135-6	진안군 주천면 금평1길 10-8	20090202	<p>물에 뗏목을 띄워 놓은 형국의 피난처라고 전해와 벌담이라고 하였으나 일제 강점기때 금평이라 개명하였고, 이 마을 명칭과 일련번호를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p>	중전주소 추가고시
32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1859	진안군 주천면 증사길 7-26	20090202	<p>중매와 외척사동, 내척사동을 합한 행정리명으로 이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p>	

진안군 공고 제 2011 - 537호

진안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건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읍지역 비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작물재배사, 창고, 단독주택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완화(안 제12조제4항)
- 나. 2007년 4월 24일 건축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증축기준을 완화(안 제13조5호 - 신설)
-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건축물과 농업·어업·축산업의 영위를 위한 창고·작물 재배사에 대한 면제규정 신설(안 제16조제2항 - 신설)

- 라. 읍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시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사, 작물 재배사는 완화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 신설)
- 바. 주무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 및 건축법시행령 조항 수정(안 제24조 및 제31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7-806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전화 063 - 430 - 2472, 팩스 063 - 430 - 2680)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단, 팩스 이용시 확인 전화 요함)

-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으로(전화 : 063 - 430 - 247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작물 재배사,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제13조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2007년 4월 24일 제1732호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16조②항 중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택회사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약대상 건축물

4.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건축물

5. 학교시설

6. 농업·어업·축산업의 영위를 위한 창고·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을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돼지·오리·개 : 2천제곱미터 미만, 소·닭·말·양·사슴·젖소 등 : 5천제곱미터 미만)
2. 작물재배사 : 5천제곱미터 미만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중 “제113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12조(적용의 완화)①~③ (생략)</p> <p>(신설)</p>	<p>제12조(적용의 완화)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작물재배사,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p> <p>2.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p>	<p>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p>
<p>제13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 및 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13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p> <p>-----</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2007년 4월 24일 제1732호 조례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p>	<p>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p>
<p>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p> <p>①(생략)</p>	<p>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p> <p>①(현행과 같음)</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